

친애하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님께,

귀하의 자녀는 1973 년 장애인 재활법 제 504 항에 따라 학교에서 직접적인 보건 서비스 및/또는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 서비스 및/또는 편의제공은 지원 서비스나 적절한 조치 또는 적절한 조정 없이는 일반 학교 활동에 참여하거나 출석하는 것이 어려운 특수한 보건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의학적 사유가 있어 투약이 필요한 학생 또는 시력 및 청력에 문제가 있는 학생에게 칠판에 가까운 자리를 배정하는 등의 편의가 제공될 것입니다.

### 자녀의 의료 서비스 및 제 504 항 편의제공 수혜 자격 여부 확인 방법

1. 학교 교장 또는 뉴욕시 교육청 전화 (718) 391-8116 번으로 연락하십시오. 이 때, 자녀의 이름, 학교, 학급을 알립니다. 자녀의 특수한 요구사항, 자녀가 필요로 하는 도움의 종류 및 빈도 등을 설명합니다.
2. 학교 교장은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귀하가 취해야 할 필요한 절차를 설명하여 줄 것입니다.
3. 귀하께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시면 보건정신 위생청과 교육청에서 서비스 요청을 검토할 것입니다. 학교의 504 팀은 회의 일정을 잡고 귀하를 이 회의에 초대하여 이 회의에서 학부모/보호자를 포함한 해당 팀이 자녀에게 제 504 항에 따른 보건 및 편의제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30 일 이내에 관련 내용이 통보됩니다.

동봉된 통지서는 자녀의 권리에 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서비스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학교장이나 교육청(718) 391-8116 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